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1 - 6 (2호)
안전유형	심의

민관이 함께하는 자율기반의

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

2021. 4. 14.



관계부처 합동

차 례

I. 추진 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1
III. 추진 방향	3
IV. 전략 과제	3
1. 국 민	3
① 국민참여형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	
② 알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	
③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·홍보 확대	
2. 기 업	5
④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	
⑤ 자율규제 운영 내실화	
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보상 강화	
3. 공 공	7
⑦ 개인정보 보호 관리기반 조성	
⑧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자율보호 강화	
V. 추진 일정	8

[붙임] 전략과제(8개)별 세부 추진일정

I. 추진 배경

- 신기술 발전, 비대면 확산 등에 따라 기존 정부 제도·규제 위주 접근*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

* 과징금, 손해배상, 분쟁조정, 시정조치, 고발·징계권고, 벌금, 과태료 등

- 8백만 이상*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관리·감독의 현실적 어려움과 기계적·획일적 규제의 비효율성도 우려

* '19년 기준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자(국세청 국세통계연보)

- 또한,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는 국민 불안 등 파급효과가 크고, 피싱 등 2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전적·예방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중요

⇒ 정부의 적극적 보호 역할 뿐만 아니라, 공공·민간 개인정보처리자와 국민이 함께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필요

II. 현황 및 문제점

- (국민)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, 구체적 권리 실현방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 실천도 미흡

<<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 >>

* 만 12세 이상~만 69세 이하 일반국민 2,500명 대상('20.9.1.~10.31.)

-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 : 정보주체 88%
-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: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경험 24.4%,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33.9%,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44.1%, 개인정보 열람·정정삭제·처리정지·동의철회 요구 권리 인지 58.4%

○ 스스로 개인정보 유·노출을 예방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

* (사례1) 개인정보를 불법공유하는 해외 웹사이트 분석 결과, 국내 웹사이트(1,362개) 계정정보(패스워드 등) 2,346만건 확인('20.12.)

** (사례2) 보이스피싱 피해액 : '17년 2,470억원→'18년 4,040억원→'19년 6,398억원(경찰청)

⇒ **국민 스스로 생활속 개인정보를 점검·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,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**

□ (기업) 개인정보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,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개발·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* 다수 발생

*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근거로 용의자 정보 제공을 거부한 쏘카 사건('21년), 개인정보 유출이 논란된 시챗봇 이루다 사건('21년) 등

○ 개인정보 보호 여부가 기업의 존폐도 결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부상한 반면,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

※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예산 현황('20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)

: 10만원 미만(35.7%), 10만원 ~ 100만원 미만(41.1%), ... 1억원 이상(1.2%)

⇒ **기업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, 자율적인 관리·감독 체계 구축, 우수기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**

□ (공공) 법정의무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 보호 평가·관리를 받고 있으나, 관리 사각지대와 만성적인 평가 미흡기관*이 존재

* '20년 기준 3년 연속 미흡기관 : 35개(기초지자체 6, 공공기업 22, 지방공기업 7)

○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개인정보 파일 등록을 회피하거나,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 저조

○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

※ 공공 개인정보보호 애로사항 1위 : 전문인력 부족('20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)

⇒ **관리·평가 제도의 근본적 개선, 기관 지원강화를 통한 취약분야 해소**

Ⅲ. 추진 방향

비전

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실천 정착

전략
목표

- 전략① 국민 : 개인정보 수집 객체 → 주체로 위상 강화
 전략② 기업 : 규제 중심 → 자율보호에 대한 보상 및 지원
 전략③ 공공 : 소극적 준수 → 공백없는 보호 체계 구축

전략
과제

- 국민** ① 국민참여 ② 알기 쉬운 서비스 ③ 권익 보호 교육·홍보
기업 ④ 맞춤형 지원 및 인력 양성 ⑤ 자율규제 내실화 ⑥ 책임과 보상
공공 ⑦ 개인정보 관리기반 조성 ⑧ 역량 및 자율보호 강화

Ⅳ. 전략 과제

국 민

1

국민참여형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

- 생활밀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참여 창구 신설(21)
 - ‘국민점검기획단’ 구성(정보보안대학 동아리, 생활공감모니터단, 전문가 등)
 - 개인정보 침해요인 발굴*·신고,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의 역할 수행
 - * (예시) 택배 송장 개선,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
- ‘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’ 제공(22)
 - PC·모바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단 도구 제공
 - 개인정보 보호 점검표*를 만들고,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공개·상용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및 무료이용 이벤트 추진(기업 MOU 체결)
 - *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여부, SNS에 개인정보 관련사항 노출 여부 등

2

알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

-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권한 등을 보장
 -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·삭제 요청 등에 처리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'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·삭제 등 대응 절차' 마련·보급('22)
 - 국민이 개인정보 수집·처리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'개인정보 라벨링' 마련('21년 연구용역, '22년 시행)

수집항목	문자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	영상정보	음성정보	위치정보	인상정보
처리·보유기간(년)	표준화될 때까지	1	-	1	-
위탁, 개조제공	제공	-	-	제공	-
국외법인 위탁	-	위탁	-	-	-

□ 개인정보 보호 지원 시스템 개발

- 회원가입 등 웹사이트 이용과정에서 비밀번호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'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' 시스템 구축('21)
 - ※ 음성화된 사이트(블랙마켓, 해커포럼 등)에 불법유통되고 있는 계정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성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(API) 개발 추진
 - ※ ('21년) 시범운영, ('22년) 정보화전략계획(ISP) 추진 →('23~'24년) 시스템 개발 추진
-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통합시스템(privacy.go.kr) 구축 추진('22~)
 - * 개인정보보호포털(privacy.go.kr),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,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합하기 위한 ISP 진행('21)

3

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·홍보 확대

□ 미래세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

- 초·중·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* 확대('21)
 - * 학교 신청으로 정규 교육시간 외 교육과정(예시: 초등 '창의적 체험활동') 시간 활용 교육 진행
 - 개인정보위 선정 전문강사 파견, 교육교재 제공(60개교→100개교)
- 초·중등학생 개인정보 보호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('21, 교육부 협업)
 - ※ 공공학습관리시스템, '교원 수업자료 제작플랫폼('21.8. 개통예정)' 등에 콘텐츠 탑재

- '2022 개정 교육과정'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 반영 추진('22, 교육부 협업)
 - 초등 '실과-정보윤리', 중등 '정보-정보윤리' 등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 교육과정 총론·각론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 반영

□ **취약계층 교육 확대,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·홍보 강화**

- 디지털배움터(1천여 개),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(10개, 시도), 주민센터(시군구)를 활용하여 어르신 등의 교육 접근성 제고('21, 과기부·행안부 협업)
- 교육부 K-MOOC에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등 심화 콘텐츠 제공('21)
 - ※ 정보보호 교육과정에도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추가(과기부 협업)

기 업

4

기업별 맞춤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

□ **민간기업 전담 컨설팅 창구 신설, 전문가 대상 교육 강화**

- 중소·영세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
 - 컨설팅 및 'PC 점검도구' 배포('21)*, 암호화 솔루션 도입 지원('22)
 - * 기술상담 등 컨설팅 100건, PC점검도구 배포 100곳
-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, 전문관리자 대상 교육 시행
 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교육과정 내실화('20년 3H → '21년 7H), AI 등 신산업 개인정보 보호 수칙 등과 연계한 교육콘텐츠 개발*('21)
 - * 신기술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정, 가명·익명처리 전문교육 과정 신설 등

□ **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**

-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(원) 전문과정 신설('21년 연구용역 추진)
 - 산업 연관성이 높은 정보보호특성화 대학, 융합보안 대학원, 정보보호 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교과목 신설 추진(과기부 협업)
- ICT컨설팅 전문기업과 협업하여 개인정보 보호 전문 컨설턴트 양성('22)

5

자율규제 운영 내실화

- 자율규제 추진체계 마련 및 기관간 협업체계 정비
 - 개별 운영되고 있는 19개 자율규제단체를 자율규제단체연합회가 총괄·조정하도록 체계 개편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, '21)
 - ※ (협업 체계) ▲자율규제단체 : 소속 회원사 자율보호 활동 지원, ▲연합회 : 자율규제단체 컨설팅·교육, 의견수렴·정책건의 ▲ 개인정보위 : 연합회 지원(행정·재정)
- 형식화된 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을 자율규제단체 중심으로 내실화
 - '표준 개인정보 처리방침' 마련(개인정보위, '21), '업종별 개인정보 처리방침' 수립(연합회+자율규제단체, '22)
 - 기업용 문답식 처리방침 작성도구(소프트웨어) 개발 추진('22~)
 - '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및 개선권고제' 도입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, '21)

6

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보상 강화

-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프로그램 마련·운영
 - 기관·개인투자자 등이 안심하고 데이터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ESG 평가*에 개인정보 보호 반영 추진('21)
 - * 산업부 K-ESG 평가,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등
 - 빅테크·대기업 등과 협업하여 정보주체 교육 및 캠페인('내 정보 지킴이' 등) 공동 수행('21)*,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('22)
 - * 네이버·카카오 등의 기업 및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협업(MOU 체결)
- 자율보호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
 - 과태료 차등감경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, 보상체계 설계('22)
 - ※ 감경근거 명확화를 위한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('21)
 - 과태료 경감기준 :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'개인정보 보호의 날(법 개정 추진)'에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·시상('22)

-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 현황 조사 실시¹⁾
 - '개인정보파일 등록업무 매뉴얼'을 개정하여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명확히 하고 업무담당자 교육('21)
 -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시행*, 수집·이용 현황 분석('21~)
 - * '21년 : 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→ '22년 : 전체 중앙행정기관 실시
- 현장검증, 진단지표 고도화 등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²⁾ 내실화
 - 현장검증* 강화, 우수기관은 차년도 관리수준진단 면제('22)
 - * 현장검증 기관 점진 확대('20년 15개 → '21년 30개 → '22년 60개 이상), 개인정보파일 등록 누락 등 증빙자료 부정제출에 대한 페널티 강화('21)
 - 신기술 관련 진단지표 도입 및 자가진단 시스템 고도화 추진('22)
- 평가대상 개선 및 결과 공개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³⁾ 실효성 제고
 - 신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·민감도 등 영향평가 대상 기준*·항목 개선
 - * (현행) 민감·고유식별정보 5만명, 연계정보 50만명, 개인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규모 (개선) 프로파일링, IoT 등의 분야와 관련된 위험·민감도 기준 추가('21년 시행령 개정)
 -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요약본 공개(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, '21)
 - ※ 영향평가 국제표준(ISO/IEC 29134) : 요약본 공개 권고, 미국·캐나다·일본 : 공개 의무화

1)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 (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, '08년~)

2)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·보호·침해 대책 등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진단하고 평가 (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2항, '08년~), '20년 진단결과는 국무회의 보고('21.2.9.) 및 공개

3)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 구축·변경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고 개선 (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, '14년~)

□ 업무평가 등에 개인정보 보호 분야 강화('22)

-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 경영평가, 공공부문 정보화 관련 각종 지침 등에 개인정보 보호 반영·강화 추진

* 행정·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,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,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규정(행안부 협업)

8

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자율 보호 강화

□ 현장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강화

- 만성적 관리수준 미흡기관 대상 현장컨설팅 확대('20년 16개→'21년 40개)

- 공무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과목 신설, 교육 콘텐츠 제공('22)

※ 공무원 교육기관(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33개)에 직급별 교육과목 개설(기관 협업),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진 양성·추천(개인정보위)

- 공공정보화를 지원하는 민간인력(감리사, 컨설턴트, PMO 등)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특화교육을 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재를 양성

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네트워크 강화 등 자율 보호 기반 마련
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대상 정책·동향·사례 등 공유 확대('21)

- 개인정보 보호 주요정책·이슈 설명 및 의제 발굴 등(연1회 → 연2회)

※ 과기정통부 정보화책임관·행안부 데이터책임관 행사 등과 연계·참여

- 사회적 관심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 매뉴얼 마련('22)

※ 예시 : 의료·복지(복지부, 질병관리청), 민원처리(지자체), 수사(경·검찰) 등

V. 추진 일정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시행령 개정 추진('21.12.)

- 자율규제단체 등 자율보호 추진체계 정비('21.11.)

- 시스템 개발 및 신규 서비스 제공 추진('22~)

구분	추진과제	관련부처	일정
국 민	① 국민참여형 보호 체계 마련	생활밀접 분야 국민참여 창구 신설	개인정보위 '21.上
		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 제공	개인정보위 '22.下
	② 알기 쉬운 보호 서비스 제공	국민 알권리 및 열람·정정 등 권한 보장	개인정보위 '22.上
		개인정보 보호 지원 시스템 개발	개인정보위 '22.
	③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확대	미래세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	개인정보위, 교육부 '22.上
		취약계층 교육 확대, 온라인 교육콘텐츠 홍보	개인정보위, 교육부, 과기부, 행안부, 지자체 '21.下
기 업	④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	전담 컨설팅 창구 신설, 전문가 교육 강화	개인정보위, 중기부, 과기부 '21.下
		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	개인정보위, 과기부 '22.
	⑤ 자율규제 운영 내실화	자율규제 추진체계 마련, 협업체계 정비	개인정보위 '21.12
		자율규제단체 중심 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 내실화	개인정보위 '22.上
	⑥ 사회적 책임 및 보상 강화	사회적 책임 강화 프로그램 마련·운영	개인정보위, 산업부, 지자체 '22.上
		자율보호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	개인정보위 '22.
공 공	⑦ 개인정보 보호 관리기반 조성	개인정보 보유·이용 현황 조사 등	개인정보위 '22
		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내실화	개인정보위 '21.下
		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	개인정보위, 기재부 '21.下
		업무평가 등에 개인정보 보호 분야 강화	개인정보위, 행안부, 기재부 '22.
	⑧ 보호 역량 및 자율보호 강화	현장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강화	개인정보위, 행안부, 인사처 '22.下
		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네트워크 강화 등	개인정보위, 과기부, 행안부 '22.